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48
----------	------

2026년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 4.15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26. 4.15

4. 상정일자 : 제33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4.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 제안이유

-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민생 안정 기조에 따라 추진된 추경과 연계하여 보통교부금 증액 등 세입 변동을 반영하고, 교육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필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

2. 주요내용

가. 편성 규모

-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9,422억원 대비 7,532억원 증가한 11조 9,401억 원이며, 이중 일반재원은 5,226억원, 목적지정재원은 2,306억원임

나. 세입예산

- 중앙정부 이전수입 7,273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210억원, 기타이전수입 49억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7,532억원이 증가함

다. 세출예산

- 세출 총액은 세입과 동일한 11조 6,954억 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를 안정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음
 - 인건비 1,094억원 증가, 학교운영비 339억원 증가, 교육사업비 2,264억원 증가, 시설사업비 3,802억원 증가, BTL 상환 등 재무활동 33억원이 증가한 것임

- 세출 사업의 주요 내역으로는,
 - 교육사업비는 총 2,2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학실험실 환경 개선,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의 기본 기능 유지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 시설사업비는 총 3,8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보강, 학교 환경 개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엄지운)

I.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26년 4월 15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조 9,422억 700만원 보다 6.9%, 7,532억 3,600만원이 증가한 11조 6,954억 4,300만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현 황		재 원 구 분	
		증감액(A-B)	증 감 륜	일 반 재 원	목적지정재원
11,695,443	10,942,207	753,236	6.9	522,653	230,583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 차이 있음

○ **세입예산**은 일반재원 5,226억 5,300만원을 증액하고, 목적지정재원 2,305억 8,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7,532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2-2〉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우 선 확 정	추 경 편 성
합 계	11,695,443	10,942,207	753,236	6.9	522,653	229,495	1,088
이 전 수 입	11,310,493	10,557,257	753,236	7.1	522,653	229,495	1,088
중앙정부이전수입	7,042,292	6,314,966	727,326	11.5	522,653	203,585	1,088
자치단체이전수입	4,247,086	4,226,098	20,988	0.5	-	20,988	-
기타이전수입	21,115	16,193	4,922	30.4	-	4,922	-
자 체 수 입	101,319	101,319	-	-	-	-	-
기 타	3,631	3,631	-	-	-	-	-
전년도이월금	0	0	-	-	-	-	-
금융자산회수	3,631	3,631	-	-	-	-	-
내 부 거 래	280,000	280,000	-	-	-	-	-
기금전입금	280,000	280,000	-	-	-	-	-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 **일반재원**의 경우,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2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26. 2.24)에 따른²⁾ 보통교부금 증액교부분 1,340억 6,600만원과 '26년 4월 17일자로 교육부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3,885억 8,700만원을 수정 교부함에 따라³⁾ 총 5,226억 5,3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임
- **목적지정재원**의 경우, 회계연도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⁴⁾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에⁵⁾ 따라 **우선확정**한 2,294억 9,5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고,
 - **추경예산**안에 10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05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⁶⁾

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6 ('26. 2.24),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378 ('26. 4.17), “2026년도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 안내 및 이에따른 신속한 추경편성 협조 요청”

4)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9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6) 목적지정재원(2,305억 8,300만원)은 ①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우선확정분(2,294억 9,500만원)**과 ②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확정 후 집행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분(10억 8,800만원)**으로 구분함

○ **세출예산**은 7,532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인건비**는 ①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인건비 513억원, ②근로자(계약제교원, 계약제근로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383억 8,500만원, ③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197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94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 **경상비**는 ①공립학교 대상 학교기본운영비 261억 1,000만원과 ②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⁷⁾ 사립학교의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78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39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사업비**는 과학실험실여건개선 59억 1,000만원, 수능모의평가지원 55억 7,100만원 등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응투자 사업을 포함하여 총 2,263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며,⁸⁾
- **시설사업비**는 ①학교시설환경개선을 포함한 일반시설 2,375억 2,000만원, ②급식시설 1,407억 7,000만원, ③학교신증설 19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80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⁹⁾
- **재무활동**은 그린스마트BTL(국고보조금) 25억 5,900만원, 민간투자사업상환 7억 1,900만원 등 BTL상환 32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7)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이하생략)

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0~11

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2~16

〈표 2-3〉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액 (C=A-B)	증률 (C/B)	일채 반원	목적지정		
									우 확	선 정	추 편
합	계	11,695,443	100.0	10,942,207	100.0	753,236	6.9	522,653	229,495	1,088	
인건비	계	7,538,620	64.4	7,429,208	67.9	109,412	1.5	109,412	0	0	
	공무원인건비	4,800,491	41.0	4,749,191	43.4	51,300	1.1	51,300	0	0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1,330,496	11.4	1,292,111	11.8	38,385	3.0	38,385	0	0	
	사립학교인건비	1,407,633	12.0	1,387,906	12.7	19,727	1.4	19,727	0	0	
경상비	계	1,057,756	9.0	1,023,817	9.4	33,939	3.3	33,939	0	0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45,220	0.4	45,220	0.4	0	0.0	0	0	0	
	학교운영비	소 계	1,012,536	8.6	978,597	8.9	33,939	3.5	33,939	0	0
		공립	764,314	6.5	738,204	6.7	26,110	3.5	26,110	0	0
		사립	248,222	2.1	240,393	2.2	7,829	3.3	7,829	0	0
사업비	계	3,068,125	26.3	2,461,518	22.5	606,607	24.6	379,302	226,217	1,088	
	교육사업비	2,406,183	20.6	2,179,792	19.9	226,391	10.4	31,167	194,136	1,088	
	시설사업비	소 계	661,942	5.7	281,726	2.6	380,216	135.0	348,135	32,081	0
		학교 신증설	52,994	0.5	51,068	0.5	1,926	3.8	1,926	0	0
		일반시설	428,868	3.7	191,348	1.7	237,520	124.1	205,760	31,760	0
		급식시설	180,080	1.5	39,310	0.4	140,770	358.1	140,449	321	0
재무 활동	계	10,487	0.1	7,209	0.1	3,278	45.5	0	3,278	0	
	지방채상환등	182	0.0	182	0.0	0	0.0	0	0	0	
	B T L 상 환	10,305	0.1	7,027	0.1	3,278	46.6	0	3,278	0	
예비비 및 기타	20,455	0.2	20,455	0.2	0	0.0	0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7

2. 추경예산안의 특징과 편성의 적절성

- 「지방재정법」 제45조¹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난 4월 15일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을 비롯한 6개 세입과목에 대한 증액편성을 요청하고, 167개 세출사업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¹¹⁾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①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증액교부된 보통교부금 3,885억원과¹²⁾ ②2026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금 증액분 1,340억원을 세입예산에 이입하고,¹³⁾ ③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목적지정재원 2,305억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요청한 것으로
 - ③외부 목적지정재원의 경우, 예산서의 예산총칙에 따라¹⁴⁾ 본예산 편성후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우선확정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제1회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조기 추경 시행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세출사업이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정부 추경의 목적 등을 고려한 추경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10)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생략)

11) (세출 감액 내역) 학생상담활동-Wee클래스구축 7억 2천만원 중 △3,000만원 감액

- 감액 사유 : 위클래스 구축 대상 학교 중 연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1교) 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

1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378 ('26. 4.17), “2026년도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 안내 및 이에따른 신속한 추경편성 협조 요청”

1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6 ('26. 2.24),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1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9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첫째. 정부는 금번 추경 편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긴급 복지, 에너지 지원 등 민생 현안 지원을 위해 신속 집행을 촉구하고 있고,¹⁵⁾ 교육부는 ‘민생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할 것을 당부하며 ①냉난방비 및 유류비 급등에 따른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 ②교육비 지원 및 교육복지 사업 확대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으나,¹⁶⁾
 - 서울시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7,532억 3,600만원)에 편성하여 증액요청한 내역 중 화장실개선, 안전관리 등 노후시설개선 2,135억 3,600만원,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노후급식시설개보수를 포함한 급식시설비 1,407억 7,000만원 등 추경증액분의 50.4%, 총 3,802억 1,600만원이 시설사업비를 편성 요청한 것으로
 - 해당 시설사업비의 투입은 최근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¹⁷⁾ 재원부족 문제를 예측한 적정예산 투입으로 사료될 수도 있으나,
 - 시설사업비의 특성상 ①이월 또는 불용 가능성이 높고,¹⁸⁾ ②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까지 소요되는 시일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③’26년 4월 시행된 정부와 교육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인 ‘국가적 위기 극복’, ‘신속집행 체계 가동’,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에 부합하는 편성인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6. 4.11), “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 체계 즉시 가동,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 조기 창출”

16) 교육부 보도자료 ('26. 4.10), “교육부, ‘민생경제 전시상황’ 대응 위한 시도교육청 추경 예산 신속 편성·집행 촉구”

17) ■ 조달청 보도자료 ('26. 4. 7), “조달청, 건설자재 현장 점검... 아스콘 공급망 관리 강화”

■ 조달청 보도자료 ('26. 4. 9), “조달청, 아스콘 수급 안정화 추진...원자재 가격 대응 강화”

1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719('26. 3.31)

(2025회계연도 시설사업비)

- 예산현액 4,205억 3,800만원, 이월액 661억 4,900만원(이월률 15.7%), 집행잔액(불용액) 503억 6,100만원(불용률 11.9%)

- 둘째.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안의 세출예산에 공무원(교원, 전문직, 지방 공무원) 인건비 513억원, 계약제교원인건비 74억 4,000만원을 포함한 인건비를 증액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12월, 제333회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가 감액한 사업비를 일부 복원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됨¹⁹⁾

- 인건비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부족이 예상될 경우 시급히 편성되어야 하나, 증액 요청한 인건비 관련 4개 세부사업(교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의 2025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414억 8,2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²⁰⁾ 결산 이후 필요시 차기 추경에 실소요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가 ‘취약계층 복지 등 민생 안정과 고유가로 인한 학교운영 안정화’ 등 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등 인건비 증액이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편성사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9) (의안번호 3369)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본예산 심사의결내역(예결위), p5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구분	항목별예산안	감액	사업내역
5	예산담당관	교원인건비	4,111,365	△85,276	- 보수 및 법정부담금
6	예산담당관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04,817	△348	- 법정부담금
7	예산담당관	지방공무원인건비	623,596	△4,963	- 법정부담금
8	예산담당관	계약제교원인건비	446,194	△34,732	- 보수 및 법정부담금
합계			5,285,972	125,319	

2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719('26. 3. 31)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액	집행잔액
교원인건비	3,982,209	16,035	3,965,519	22,769	3,848,441	12,75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82,679	4,244	69,955	1,428	67,404	662
지방공무원인건비	588,828	6,223	566,255	2,164	537,818	2,002
계약제교원인건비	392,664	14,980	385,642	9,942	362,288	3,837
합계	5,046,380	41,482	4,987,371	36,303	4,815,951	19,257

- 셋째. 서울시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요청한 교육사업비는 2,263억 9,100만원이고, 이중 13.7%, 311억 6,7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사업비의 일반재원 편성분중 90.3%, 281억 7,325만원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 대응투자액 또는 교육부 주관 사업의 시도분담금 편성으로 확인되어²¹⁾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보충성’과 ‘시급성’을 충족하는 편성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²²⁾
 - 더욱이 '26년도 본예산 편성 후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 요청된 대규모 대응투자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편성인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적정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편성 사례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0
 - 세세부사업 학생안전관리강화, 초등방과후학교운영, 학교복합시설활성화 외 사업은 모두 대응투자 사업임

2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43,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 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²³⁾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²⁴⁾ 및 특별회계전입금²⁵⁾으로 구성됨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전입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6조 3,149억 6,600만원) 보다 11.5%, 7,273억 2,600만원이 증액된 7조 422억 9,2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을 경정 요청한 것임

〈표 3-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B)	재 원 구 분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재 원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7,042,292	6,314,966	727,326	11.5	522,653	203,585	1,08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37,462	5,813,988	723,474	12.4	522,653	200,821	-
보통교부금	6,246,851	5,724,198	522,653	9.1	522,653	-	-
특별교부금	200,821	-	200,821	순증	-	200,821	-
증액교부금	89,790	89,790	-	-	-	-	-
국고보조금	33,527	30,763	2,764	9.0	-	2,764	-
특별회계전입금	471,303	470,215	1,088	0.2	-	-	1,088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②, ③ 생략)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24)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25) 특별회계전입금 :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세 일부 및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영유아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6)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5조 7,241억 9,800만원) 보다 9.1%, 5,226억 5,300만원 증액된 6조 2,468억 5,100만원으로 조정 요청한 바,
 -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27)에 근거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26년 2월)28)에 따른 증액분 1,340억 6,600만원과 ②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29)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30) 증액분 3,885억 8,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2〉 보통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6,246,851	5,724,198	522,653	9.1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5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6 ('26. 2.24),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29)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① 의안번호 : 2217938, ② 제안일 : '26. 3.31, ③ 의결일 : '26. 4.10

3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378 ('26. 4.17), “2026년도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 안내 및 이에 따른 신속한 추경편성 협조 요청”

-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내역 중 '25년도 교육부 확정교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이의신청 결과가 반영된 정정교부금 621억 1,700만원이 포함된 것이나,
- '25년도 보통교부금 산정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중 '교육복지지원비-계층 간 균형 교육비'³¹⁾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 학생 13,810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정정교부 요청하여 교육부가 621억 1,700만원을 추가교부한 것인 바,³²⁾
- 해당 항목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배려계층 학생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고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25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을 교육부가 수용하여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621억 1,700만원)된 것으로 확인되나,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주된 세입원임에도 보통교부금 산정 기초 자료를 부정확하게 작성·제출한 것은 물론
- 매년도 유사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기초자료에 1만 3,000명 이상 되는 대상 학생수를 누락시키고, 이를 결재과정에서도 검증하지 못하여 보통교부금이 과소 교부된 것은 사업부서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31) ('26년도 현행)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계층 간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32)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25. 3.27), "(서울)2025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이의신청서 제출" <계층 간 균형교육비(배려계층 지원) 확정교부 대비 정정교부 산출내역 비교>

구분	확정교부 산출내역 [A]			정정교부 산출내역 [B]			차액 [A-B] (백만원)
	학생수 (명)	단위비용* (원)	산출금액** (백만원)	학생수 (명)	단위비용* (원)	산출금액** (백만원)	
교육급여 수급자	22,602	4,498	101,663	36,412	4,498	163,781	△62,117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1,553	4,498	6,985	1,553	4,498	6,985	-
차상위계층	1,621	4,498	7,291	1,621	4,498	7,291	-
다문화가정	20,388	4,498	91,705	20,388	4,498	91,705	-
북한이탈주민가정	353	4,498	1,587	353	4,498	1,587	-
특수교육대상자	9,911	4,498	44,579	9,911	4,498	44,579	-
합계	56,428	4,498	253,813	70,238	4,498	315,930	△62,117

*계층 간 균형교육비 학생별 단위비용, **학생수 × 단위비용

〈표 3-3〉 보통교부금 증액분 세부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측정항목	202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A)	202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B)	증 감 내역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보통교부금 ① - ②		5,858,263	5,724,197	134,066	2.3	
기준재정수요 ①	합계	10,402,903	10,166,305	236,598	2.3	
	교직원인건비	6,929,463	6,867,569	61,894	0.9	
	학교운영비	1,743,887	1,739,754	4,133	0.2	
	교육행정비	124,592	124,592	-	-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지원비	327,194	311,792	15,401	4.9	
	교육기관 등 시설비	601,983	603,764	△1,780	△0.3	
	유아교육비	162,826	163,232	△406	△0.2	
	늘봄학교사업비	169,359	169,359	-	-	
	고교무상교육지원비	103,598	-	103,598	순증	
	재정결합보전	31,872	31,872	-	-	
	교원연수운영지원	84,459	92,571	△8,111	△8.8	
	디지털기반교육활성화 지원	43,523	43,523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보조	23,156	23,403	△247	△1.1	
	자체노력수요	소계	△5,132	△5,132	-	-
		학교통합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	-	-	-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	-	-	-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7,867	7,867	-	-
	재정집행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15,000	△15,000	-	-	
	재정집행효율화 지원 (상반기 예산집행 비율)	2,000	2,000	-	-	
정정교부		62,117	-	62,117	순증	
기준재정수입 ②	합계	4,544,640	4,442,107	102,533	2.3	
	법정전입금	소계	4,240,761	4,241,220	△459	△0.0
		지방교육세	1,493,698	1,493,698	-	-
		시·도세	2,357,628	2,357,628	-	-
		담배소비세	212,962	212,962	-	-
		균특회계사업보전분	34,775	35,134	△359	△1.0
		지방이양사업보전분	23,743	23,988	△245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포함)	117,953	117,809	144	0.1
	학교용지부담금	-	-	-	-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89,790	-	89,790	순증	
	고교무상교육전입금	13,808	-	13,808	순증	
	자체수입	200,886	200,886	-	-	
자체노력수입	△605	-	△605	순감		

※ 자료근거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6 ('26. 2.24),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021 ('25.10.22),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³³⁾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중 1,000분의 38의 범위내에서 ①국가시책사업, ②지역교육현안, ③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자원인 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재정법」³⁴⁾에 따른 특별교부금 우선확정분 2,008억 2,100만원 전액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
- 3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① 생략
② 교부금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③ 보통교부금 자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자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자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자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자원의 100분의 1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자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자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자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이하생략)
[본조신설 2023.12.31.]
[법률 제19938호(2023.12.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34)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목적지정재원은 ①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우선확정분과, ②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확정 후 집행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분으로 구분함

- '26년도 본예산에는 대응투자 예산 부족, 특별교부금 교부통지 지연 등의 사유로 특별교부금을 미편성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총칙」 제9조³⁵⁾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에 대한 확정통지에 따라 우선 확정된 2,008억 2,100만원을 반영하는 것임

〈표 3-4〉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00,821	-	200,821	순증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6

- 특별교부금의 편성 내역을 검토하면, ①초등방과후학교운영(155억 7,900만원) 등을 포함한 국가지책사업 105건, 총 1,064억 1,400만원, ②학교시설환경개선의 기타사업(186억 7,100만원) 등을 포함한 지역교육현안 11건, 총 307억 5,200만원, ③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96억 1,000만원)을 포함한 디지털교육혁신 18건, 636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4건, 2,008억 2,100만원에 대해 우선 확정분을 세입예산안에 계상한 것임³⁶⁾

3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 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36)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26. 1), 재구성

- 국가지책사업수요
 - (교부 기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유아, 초·중등교육 및 특수 교육 관련 국가지책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교부 대상) 국가책임 교육·돌봄 지원, 디지털 교육혁신 지원,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원, 교육복지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교육행정 지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
- 지역교육현안수요
 -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 (교부 대상)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학교교육시설 개선 사업,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교육청(교육지원청) 제외], 시도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 (교부 기준)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와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교부 대상)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사업 등 방과후교육의 활성화 수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표 3-5〉 특별교부금 편성 세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우 선 확 정 분		추 경 편 성 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특 별 교 부 금	134	200,821	134	200,821	-	-
① 국가시책사업	105	106,414	105	106,414	-	-
② 지역교육현안	11	30,752	11	30,752	-	-
③ 디지털교육혁신	18	63,655	18	63,655	-	-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7

(3)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인 바,

-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국고보조금은 3건으로, 기정예산(307억 6,300만원) 보다 9.0%, 27억 6,400만원이 증액된 335억 2,700만원을 전액 우선확정하고, 추경예산안을 통해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임

〈표 3-6〉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우선확정액 합계)	증 감 륜
33,527	30,763	2,764	9.0
세 부 사 업	세 세 부 사 업	우 선 확 정 액	우 선 확 정 일
도 서 관 운 영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국 고 보 조 금)	17	'26. 2.20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발 명 교 실 운 영 (국 고 보 조 금)	188	'26. 3.16
민 간 투 자 사 업 상 환	그 린 스 마 트 스 쿨 (국 고 보 조 금)	2,559	'26. 3.26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45

(4) 특별회계전입금

- **특별회계전입금**은 「영유아특별회계법」 37)에 따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예산에서 정하는 정부의 일반 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한 교육부의 **영유아특별회계**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예산(4,702억 1,500만원) 보다 0.2%, 10억 8,700만원 증액한 4,71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26년 1월,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에 따라 세입예산 과목이 신설되어³⁸⁾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9)에 따른 세입과목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에 편성된 4,702억 1,500만원을 순감하고, 신설 과목인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에 경정하는 것으로 확인됨

37)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8호, 2025.12.2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이하생략)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이하생략)

3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6. 1. 2] [교육부훈령 제548호, 2026. 1. 2, 일부개정] [별표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0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1400	특별회계전입금		
1140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유아 교육 지원 특별회계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회계전입금
11402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영유아특별회계 전입금	○ 영유아특별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회계전입금

3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8호, 2025.12.23,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21228호, 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폐지한다.

〈표 3-7〉 특별회계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륜
특별회계전입금		471,303	470,215	1,087	0.2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	470,215	△470,215	100.0
	영유아 특별회계전입금	471,303	-	471,303	순증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47~49

- 아울러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증액분 10억 8,700만원은 '2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항목 중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⁴⁰⁾

〈표 3-8〉 2026년도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확정교부 (A)	예정교부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륜 (C / B)
합	계	471,302	470,214	1,087	0.2
①	유아교육비보육료	405,581	404,493	1,087	0.2
	유치원	205,171	205,171	-	-
	어린이집	192,183	192,183	-	-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8,225	7,138	1,087	15.2
②	무상교육보육실현	65,721	65,721	-	-

※ 자료근거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3987 ('25.10.14) “202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예산(안) 가내시 통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438 ('26. 1.27)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 지침 등 안내”

40)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438 ('26. 1.27)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 지침 등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9
- 유아보육료 지원항목 중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단가 인상(1인당 월13,000원→15,000원)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중 비법정이전수입 209억 8,8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세입예산에 계상 요청한 것임

〈표 3-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내역		재원구분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4,247,086	4,226,098	20,988	0.5	-	20,988	-
법정이전수입		4,199,173	4,199,173	-	-	-	-	-
	지방교육세전입금	1,902,299	1,902,299	-	-	-	-	-
	담배소비세전입금	233,127	233,127	-	-	-	-	-
	시도세전입금	1,915,321	1,915,321	-	-	-	-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778	3,778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7,811	117,811	-	-	-	-	-
	교육급여보조금	9,730	9,730	-	-	-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7,107	17,107	-	-	-	-	-
비법정이전수입		47,913	26,925	20,988	77.9	-	20,988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6,352	15,763	10,589	67.2	-	10,589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1,561	11,162	10,399	93.2	-	10,399	-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53

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 생략)

(1)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2)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43)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전입금으로 기정예산(269억 2,500만원) 보다 209억 8,800만원 증액된 479억 1,300만원을 경정요청 한 바, 전액 우선확정분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157억 6,300만원) 보다 105억 8,900만원을 증액한 263억 5,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 무상급식(81억 7,600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8억 3,700만원),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15억 7,500만원)를 포함한 3건, 105억 8,9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기정예산(111억 6,200만원) 보다 103억 9,900만원 증액한 215억 6,1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으로,
 - 무상급식(54억 9,300만원), 공공도서관환경개선(30억원)⁴⁴⁾, 영어원어민 인건비및제경비(11억 8,600만원), BTL원금·이자(7억 1,900만원)를 포함한 4건, 103억 9,8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경정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43)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4) 강남구-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21. 4.28)에 따른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예산('26. 1차분)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편성액은 21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161억 9,200만원)보다 30.4%, 49억 2,100만원을 경정요청한 바,

〈표 3-10〉 기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륜 (C / B)
합	계	21,114	16,192	4,921	30.4
민	간 이 전 수 입	16,203	16,192	11	0.1
	기 부 금	3,702	3,702	-	-
	기 타 지 원 금	6,501	6,490	11	0.2
	기 타 협 력 사 업 비	6,000	6,000	-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910	-	4,910	순증
	전 입 금	4,910	-	4,910	순증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59

- **민간이전수입**은 기정예산(161억 9,200만원) 보다 기타지원금 1,1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디지털문해학습장 지원금 1,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자 경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⁴⁵⁾

45)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역평생교육팀(문해교육센터)-677 ('26. 3.24) “2026년 디지털 문해 학습장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및 강사 인력풀 안내”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2
 - (기타지원금) 2026년 디지털 문해학습장 선정에 따른 지원금(노원, 마포, 영등포 평생학습관)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①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26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48억 8,100만원)⁴⁶⁾와 ②제주도 위탁 교육생 2명에 대한 지방공무원연수운영(1,400만원)⁴⁷⁾, ③교육부 및 국립학교 교원의 초등교장 자격연수 경비(1,400만원)⁴⁸⁾를 포함한 3건에 대하여 49억 1,000만원을 순증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46)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33378 ('25.10.21), “2026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계획”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33726 ('25.10.23), “2026학년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기본 계획 수정 사항 알림(시도교육청)”

47)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5843 ('25.12.22), “(서울교육연수원) 2026년 상반기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훈련 알림”

48)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1715 ('26. 3.17), “2026년도 교육부(본부 및 소속기관 등) 및 국립학교 교(원)장, 교(원)감 자격연 수 예정자 명단 안내”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7449 ('26. 4. 6), “(서울)2026년 초등 교장 자격연수 교육부 지명 대상자 연수비 납부 안내”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일반재원 증액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재원 증액 편성액은 5,226억 5,3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증액분(7,532억 3,600만원)의 69.3%에 해당됨

〈표 4-1〉 일반재원 주요 증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증 감 액
안 전 총 괄 담 당 관	학 생 안 전 관 리	등하교알림서비스운영지원	904
예 산 담 당 관	교원·교육전문직원·지방공무원인건비	보 수 (정 액 급 식 비 등)	51,300
	계약제교원인건비	퇴 직 금 관 리	7,44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	945
	학 교 운 영 비 지 원	학 교 기 본 운 영 비	26,110
학 생 맞 춤 지 원 담 당 관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 녀 교 육 지 원	다 문 화 교 육 지 원 센 터 운 영	570
노 사 협 력 담 당 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교 육 공 무 직 원 통 합 인 건 비	30,000
창 의 미 래 교 육 과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지능형과학실험실환경구축	5,910
초 등 교 육 과	늘 봄 학 교 운 영	초 등 방 과 후 교 육 비 지 원	1,483
중 등 교 육 과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925
	특색교육과정운영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1,443
	학 력 평 가 관 리	수능모의평가시행분담금	5,571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증 감 액
학생역량혁신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EBS수능강의운영지원	1,780
	학력향상지원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929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보건관리	학생치료비	900
	학교폭력예방및교육	심의위원회운영	1,192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운영	특수건강진단실시	1,773
	취업역량강화	산업체직무교육	2,025
학 교 지 원 과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7,829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립고인건비재정결함보조	12,785
		사립중인건비재정결함보조	5,326
		사립특수학교인건비재정결함보조	690
	학 교 신 증 설	공립초교실증축	754
		공립초학교신설	785
교육시설안전과	기관시설유지관리	교육지원청청사시설유지보수	2,887
		직속기관환경개선	1,075
	학교급식환경개선	급식실환기개선	95,282
		급식시설개선	10,116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7,269
	학 교 시 설 확 충	강당검체육관	12,677
		기타증축	2,052
	학교시설환경개선	화장실개선	37,844
		전기시설개선	1,645
창호개선		6,817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증감액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벽개선	5,918
		소방시설개선	590
		방수공사	4,769
		바닥개선	6,415
		도장공사	764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614
		기타사업	41,345
		장애인편의시설	1,667
		안전관리(내진보강)	11,537
		안전관리(정밀점검)	3,031
		학교공간재구조화	9,900
	미래학교추진단	시설사업운영	학교복합시설활성화
그린스마트스쿨		공립초	22,379
		사립고	543
학교시설환경개선		공립유	2,190
보건안전진흥원	학교급식환경개선	공립고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452
		공립중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3,328
		공립초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7,338
		사립고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2,884
		사립유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564
		공립초신규학교조리기구구입	1,040

※ 세출예산 증액편성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① 경상비

□ 학교기본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87)

□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사업별 설명자료, p.671)

- 예산담당관 소관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지원과 소관 운영비재정결함보조는 공립 1,274교에 261억 1,000만원, 사립 301교에 78억 2,900만원 총 339억 3,900만원을 증액요청 한 것으로, 고유가·고물가 대응, 학교 재정 안정 및 학교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요청한 것임

〈표 4-2〉 학교기본운영비,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기정 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 예산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676,397	26,110	702,507	663,586
	(사립) 운영비재정결함보조	231,195	7,829	239,024	237,716
	합 계	907,592	33,939	941,531	901,302
구분	학교급	학교수	공통경상운영비 지원분	학교급식운영비 지원분	지원액 합계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유	295	989	265	1,255
	초	566	7,912	6,187	14,099
	중	277	3,947	2,834	6,781
	고	116	2,367	1,235	3,602
	특수	11	196	37	234
	각종	9	110	26	136
	계	1,274	15,523	10,586	26,110
사립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중	109	1,403	881	2,285
	고	174	3,336	1,905	5,241
	특수	18	256	45	302
	계	301	4,996	2,832	7,829
합 계		1,575	20,519	13,419	33,93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3230 ('26. 4. 9) “2026년 학교운영 안정지원 예산 편성(안)”

- 예산담당관에서 작성한 “2026년 학교운영 안정지원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①우리나라 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에너지물가 상승 우려 확산, ②식재료 가격 인상폭 확대 전망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여 공·사립 대상 공통 경상운영비와 학교급식운영비 지원분을 계상한 것임

- 금번 추경으로 편성되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예산의 경우, 물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학교급식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공공요금, 설비유지비 및 식품비 등 자율적으로 편성·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됨⁴⁹⁾
- 그럼에도 사업부서는 학교별 적정 지원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자체 수립 계획에 별도 산출기초를 명시하고 있고,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편성내역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히 기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4-3〉 공·사립 학교기본운영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산출내역

(단위 : 일, 원)

구분	공통경상운영비	학교급식운영비		
		지원 일수(일)	지원 단가(원)	비고
유	2025년 대비 2026년 3.9% 인상	182	106	학생수는 예정 교부 기준으로 적용
초·특수		192		
중		180		
고·각종		173		

- ※ 학교급식운영비 지원액 = 학생수×급식지원일수×관리비 지원 단가
- ※ 학교급식운영비의 경우 학교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관리비 단가를 차용하여 초등학교 기준으로 동일 적용, 급식 지원 일수는 학교급별 별도 적용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3230 ('26. 4. 9) “2026년 학교운영 안정지원 예산 편성(안)”

- 49)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3230 ('26. 4. 9) “2026년 학교운영 안정지원 예산 편성(안)”
- 물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학교급식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 취지 반영
 - 단,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사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p11, II. 학교급식 예산 관리, 재구성
1. 학교급식 예산 사용 기준
- 부족액 발생 시 학교기본운영비(학교회계) 부담
 - 학교급식 최대 지원일수 이외의 급식일 식품관리비 등
 - 급식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배식·운반 급식보조인력 인건비(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기타 부족분 등을 책정하여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 도모
 - 관리비 : 식품비로 통합사용 가능, 단 식품비는 관리비로 전환 사용 불가

② 교육사업비

□ 과학실험실여건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248)

- 창의미래교육과 소관 **과학실험실여건개선**은 AI·디지털 및 첨단 과학기술 활용 STEM 교육, 빅데이터 기반 다양한 과학 탐구실험 및 융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과학실험실 환경을 구축하고자 59억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여 제출한 것임

〈표 4-4〉 과학실험실여건개선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기정 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 예산
합	계	4,006	5,910	9,916	2,740
	과학실험폐수및폐시약처리	416	-	416	416
	지능형과학실험실환경구축	3,589	5,910	9,499	2,323

- 지능형과학실험실환경구축은 교육부의 “2026년도 제1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3-8, 교과교육지원) 지원 계획”에 따라,⁵⁰⁾ '26년도 본예산에 지능형과학실 109실분의 학교회계전출금 3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50)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1921 ('25.11. 6) “2026년 제1차 국가시책사업(3-8.교과교육지원)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수정 알림”

- (지능형 과학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성취기준 구현을 위한 현실·디지털 과학실험·탐구 공존형 환경 기반 조성 ※ 시도 자체 재원 마련(시도 대응투자)을 통한 사업 확대 협조
- 시도교육청별 지원 학교 수 및 대응투자 금액(안) (단위 : 백만원, 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교 지원 학교 수	129	16	40	31	32	26	11	385	11	48	28	100	111	79	118	5	1,170
대응투자 필요 학교 수	297	33	65	33	69	33	28	900	31	116	100	237	265	80	280	6	2,573
대응투자 필요금액	8,910	990	1,950	990	2,070	1,980	840	27,000	930	3,480	1,000	7,110	7,950	2,400	8,400	180	76,180

※ 본예산 대응투자 금액 미확보 시도는 추경 등을 통해 대응투자 금액 확보 요망

※ 세종은 관내 전 학교(105개교)가 지능형 과학실 구축 완료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특별교부금 우선확정분으로 129실분의 38억 7,000만원, 일반재원으로 197실분의 5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운용 기준」에 따르면,⁵¹⁾ 국가시책사업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대응투자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된 물량에 맞게 **지능형과학실험실환경구축**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 동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지원 학교(129교)보다 교육부가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대응투자 필요 학교수(297교)가 2배 이상 많아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 투입이 증가한 바,
-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체계 개편이 예측되는 상황에서⁵²⁾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대응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재정운용 자율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교육부에 대응투자사업 규모에 대한 조정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1)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25. 1), p11

- 국가시책사업은 시·도교육청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하되,
 -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이 필요하거나 점진적으로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대응투자 비율을 결정한 후 지원
 - 신규 대응투자 사업은 사전에 지방교육재정 담당 부서 및 시·도교육청과 대응투자 비율을 협의한 후 신청
 -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의무사업은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이전에 사전 통보

52)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26. 3), p570, 4. 주요 사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교육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한편,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교육 수요를 고려하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노후 교육시설 개선이나 특수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초등방과후학교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357)

- 초등교육과 소관 **초등방과후학교운영**은 방과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원 이내의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70억 6,200만원을 증액 요청하여 제출한 것임

〈표 4-5〉 초등방과후학교운영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기정 예산 (A)	추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3,402	17,062	20,464	5,094
	초등방과후교육비지원	-	1,483	1,483	-
	초등방과후교육비지원 (특 별 교 부 금)	-	15,451	15,451	-
	방과후업무효율화지원 (특 별 교 부 금)	-	128	128	-
	초 등 방 과 후 학 교 사 업 지 원 비	3,402	-	3,402	3,396
	초 등 방 과 후 학 교 프 로 그 램 운 영 지 원	-	-	-	1,698

- 이 중 초등방과후교육비지원은 '25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2025회계연도의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228억 2,700만원 중 14억 8,300만원에 대한 사업기간을 '26년 12월까지 연장 요청하여 교육부로부터 '25년 12월, 연장을 승인받았으나, 53)

- '26년 본예산(안) 제출 시점이 경과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연장 승인받은 사업비 14억 8,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53)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4415 ('25.12. 9) “2025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기간 연장(이월) 승인 알림(서울)”

③ 인건비

□ 공무원(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별 설명자료, p.73)

- 예산담당관 소관 **공무원인건비**는 기정예산(4조 7,491억 9,000만원) 대비 1.0%, 513억원을 증액한 4조 8,004억 9,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6〉 공무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4,749,190	51,300	4,800,491	4,670,587	
보	수	3,576,059	51,300	3,627,359	3,507,811	
	교	원	3,020,350	47,776	3,068,126	2,982,807
		교 육 전 문 직 원	82,024	-	82,024	70,101
		지 방 공 무 원	473,685	3,524	477,209	454,902
	법 정 부 담 금	1,006,091	-	1,006,091	1,006,118	
	명 예 퇴 직 수 당	85,500	-	85,500	84,555	
	맞 춤 형 복 지 비	81,540	-	81,540	72,102	

- **교원인건비**의 경우,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⁵⁴⁾에 따른 교원의 정액급식비 인상분(월14만원→월16만원)을 반영하기 위해 92억 4,2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②교원 명예퇴직자 수 감소에 따른 실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봉급 306억 4,500만원 및 명절휴가비 3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③육아휴직수당 지급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40억 8,9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54)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5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추정사유 중 ②교원 명예퇴직 수 감소에 따른 실 집행현황 반영과 ③육아 휴직수당 지급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반영의 경우,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휴직이나 퇴직 등은 사전예측이 어려워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이미 지난 '25년 12월, 교원인건비 전용⁵⁵⁾ 당시에도 증액의 사유로 명예퇴직자 감소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적시한 바 있어 휴·퇴직에 따른 인건비 소요 예측에 대한 정밀도를 재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무원인건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⁵⁶⁾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인상분(월14만원→월16만원)을 반영하기 위해 17억 1,4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4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6년도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⁵⁷⁾에 따른 봉급 인상분 13억 7,6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공무원인건비**의 경우, '26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⁵⁸⁾ 세출감액되어 금번 추정 예산안을 통해 감액된 재원을 일부 확보하고자 증액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55)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1707 ('25.12.12),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용(교원인건비)”

5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6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57)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2025.12.30,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발췌)

구분	개정내용
저연차 실무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① 공무원 보수 전년('25년도) 대비 3.5% 인상
	② 저연차 공무원 보수 수준 추가 개선 - 7~9급 봉급 6.6%(공통 3.5% + 추가 3.1%) 인상
	③ 시간외근무수당 8급(상당) 단가 인상 - ('25년도 단가) 10,729원 → ('26년도 단가) 12,113원

58)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3369), 본예산 심사의결내역(예결위), p5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고
교원인건비	4,111,365	4,026,088	△85,276	보수 및 법정부담금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04,817	104,468	△348	법정부담금
지방공무원인건비	623,596	618,633	△4,963	법정부담금

- 인건비성 경비는 필수 편성 예산임에도 매년도 부족분을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세출예산의 한정성을 공감해달라는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구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별 설명자료, p.77)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교원인건비**는 기정예산(4,114억 6,200만원) 대비 1.8%, 74억 4,000만원을 증액한 4,189억 200만원으로 경정 요청한 바,
 - 계약제교원 통상임금 산정기준 정비⁵⁹⁾에 따라 계약제교원 퇴직금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74억 4,0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4-7〉 계약제교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411,462	7,440	418,902	416,645
	보 수	336,100	-	336,100	344,997
	기 타 직 법 정 부 담 금	36,885	-	36,885	36,891
	퇴 직 금 관 리	23,425	7,440	30,865	21,410
	맞 춤 형 복 지 비	15,052	-	15,052	13,347

- '24년 12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임금)⁶⁰⁾ 에

59)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14038 ('26. 4. 6), “기간제 교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안내”
 60) 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제외)
 ② 성과급(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③ 효력범위 : 판결('24.12.19)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25년 2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재직·근무일수 조건 부과'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⁶¹⁾)을 제외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으나,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년 4월에 이르러서야 계약제교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비한 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해당 사항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일('24.12.19) 이후 퇴직자부터 퇴직금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 법령 개정이나 판결에 따른 예산 수요 발생 시 관련 기준 등을 적기에 수립, 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⁶²⁾을 위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공무원 인건비 (사업별 설명자료, p.133)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원인건비**는 기정예산(8,409억 6,200만원) 대비 3.5%, 300억원 증액한 8,709억 6,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26년 2월, 「2025년 단체(임금)협약」 체결⁶³⁾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기본급·명절휴가비·급식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 및 임금 인상과 연계되는 퇴직급여 및 법정부담금 등을 반영⁶⁴⁾하기 위하여 300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61)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5. 2. 6), p.2

62)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3)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노사협력담당관 부서업무방 65번, “2025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임금)협약 체결 안내” ('26. 2.11)

64) 2025년도 단체(임금)협약 주요 내용

〈표 4-8〉 교육공무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840,962	30,000	870,962	812,669
	교육공무원 통합인건비	823,428	30,000	853,428	796,663
	맞춤형복지비	17,534	-	17,534	16,006

□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390, p.674)

○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재정결함지원**중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기정예산(1조 2,823억 6,000만원) 대비 1.4%, 188억 100만원을 증액한 1조 3,011억 6,100만원으로 경정 요청한 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인상(월14만원 →월16만원)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정액급식비 인상분, 계약제교원 통상임금 산정기준 정비⁶⁵⁾로 인한 계약제교원 퇴직금 추가 소요액 및 '26년 2월, 「2025년 단체(임금)협약」⁶⁶⁾ 체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구분	2025년도 단체(임금)협약
기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78,500원 인상 - 1유형 : 2,266,000원 → 2,344,500원 - 2유형 : 2,066,000원 → 2,144,500원
근속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간액 : 1,000원 ↑ (40,000원 → 41,000원) ■ 상한 : 1년 확대(24년)
급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0,000원 인상(150,000원 → 160,000원)
명절휴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94,500원 인상(1,850,000원 → 2,144,500원) ■ 2유형 기본급의 100%
영양사식생활지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5만원 신설
위험수당(영양사·조리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만원 인상(50,000원 → 70,000원)
특수교육지원수당(특수교육실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만원 신설
비교(11년차)	1인당 연간 인상액 : 149만원(2유형 11년차 기준 4.4% 인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3415 ('26. 4.1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건비 편성안”

65)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14038 ('26. 4. 6), “기간제 교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안내”

임금 인상분(본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188억 1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9〉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1,282,360	18,801	1,301,161	1,240,708
	사립고등학교	873,672	12,785	886,457	845,334
	사립중학교	336,619	5,326	341,945	325,648
	사립특수학교	72,068	690	72,759	69,726

- 인건비재정결함지원중 중등교육과 소관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⁶⁷⁾의 경우, 기정예산(200억 6,000만원) 대비 4.6%, 9억 2,5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바,

〈표 4-10〉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소요예산	산출내역	내역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925	○ 학교회계전출금 - 92,500,000원×10명	925,000천원 = 925,000천원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91

66) “2025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임금)협약 체결 안내” (’26. 2.11)

67)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90

- '26년 상반기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집행 결과에 따른 하반기 부족 예상분을 증액 요청한 것이나⁶⁸⁾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업별 설명자료⁶⁹⁾에는 교원 명예퇴직자 예상인원 감소를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 '25년도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집행현황 분석 결과, '25년도 본예산(208억원) 대비 △10.1%, △21억 1,200만원이 추경을 통해 감액되었으며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실지급인원 또한 5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출 추계를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어 증액요청한 9억 2,500만원이 적정한 소요예산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1〉 '25년도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예 산 (A)	현 액				집 행 실 적				집 행 잔 액 (G=D-E-F)
	추 경 (B)		변 경 (C)	계(D=A+B+C)	상 반 기		하 반 기		
	1 차	2 차			인 원	집 행 액(E)	인 원	집 행 액(F)	
20,800	425	△2,112	-	19,112	170	14,288	53	4,823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785 ('26. 4. 8)

68)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증액 요청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본예산		집행		예산잔액		하반기 집행예정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추정인원	금액
236	20,060	152	14,058	64	6,001	74	6,926
1인당 85,000천원		1인당 92,491천원		'26년 상반기 집행단가(92,500천원) 및 최근 4년간 하반기 명예퇴직 평균인원(74명) 반영하여 산출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91

69)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675

Ⅲ. 추경 증감내용

1.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내용 (중략)

- 교원 명예퇴직자 예상 인원 변동(약 56명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④ 시설사업비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시설사업비⁷⁰⁾는 기정예산(2,817억 2,600만원)보다 135.0%, 3,802억 1,600만원을 증액한 6,619억 4,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①일반재원 3,481억 3,500만원과 ②목적지정재원 320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2〉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추 경 증 감 액	추 경 예 산 안	재 원 구 분
281,726	380,216	661,942	① 일반재원 : 348,135 ② 목적지정 : 32,081

□ 학교신증설 (사업별 설명자료, p.678, p.682)

- 학교신설의 경우, (강동송파)산빛초⁷¹⁾를 포함한 3교⁷²⁾에 일반재원으로 시설비, 교육환경평가 사전조사비, 설계용역비 등 총 8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13〉 학교신설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 경 예 산 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일 반 재	목 적 지 정	우 선 확 정	추 경 편 성
36,013	35,182	831	2.4	831	-	-	-

70) 시설사업비 내역

- 학교신증설 : 학교신설, 교실증축
- 일반시설비 :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 급식시설비 : 신규학교조리기구구입,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노후급식시설개보수

71)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98

72)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

- 공립초(2교) : (강동송파)(가칭)산빛초, (성북강북)(가칭)신길음초
- 공립특수(1교) : (성동광진)(가칭)성진학교

- (강동송파)(가칭)산빛초는 북위례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가 예측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초등 42학급(특수1), 병설유치원 6학급(특수1)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6년 본예산에 시설비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6억 5,300만원을 추가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⁷³⁾
- (성북강북)(가칭)신길음초⁷⁴⁾는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등 주택재개발에 따라 증가가 예측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길음동 공공공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5년 10월, 학교신설계획을 수립하고 '26년 3월, 사전건축기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위한 사전조사용역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⁷⁵⁾

73) (강동송파)(가칭)산빛초 공사 추진 현황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6. 3.27 기준)

준공 예정시기	2026.10.
건축규모	연면적 15,494.13㎡(지하 1층, 지상 5층)
공정률	57.74%
진행중 공사 내용	· 옥상 복합시트방수 작업 진행 · 전층 시멘트 벽돌 쌓기 작업 진행

74) (성북강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935

7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p.48

○ (가칭)신길음초 신설

- 기간: 2024. 1. ~ 2031. 2.
- 규모: 22학급(특수2), 병설유치원 4학급(특수1)
- 내용: 길음재정비 촉진구역 내 공공공지 무상사용 협약, 길음지구 주택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및 통학여건 개선
- 총사업비,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향후
계	68,380	-	68,380	29,908	200	10,092	15,311	12,869	-
국고	-	-	-	-	-	-	-	-	-
특별교부금	-	-	-	-	-	-	-	-	-
지자체 대응투자	-	-	-	-	-	-	-	-	-
자체재원	38,722	-	38,722	250	200	10,092	15,311	12,869	-
지방채	-	-	-	-	-	-	-	-	-
기타	29,658	-	29,658	29,658	-	-	-	-	-

- (성동광진)(가칭)성진학교⁷⁶⁾는 동북권역의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26년도 본예산에 설계공모보상금과 설계용역비 19억 7,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설계 추진과정중 발생하는 경제성 검토용역(Value Engineering)⁷⁷⁾ 비용 4,400만원과 학교건설위원회⁷⁸⁾ 수당 24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4〉 학교신설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급별	학교명	개교일	학급규모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액	향후소요액
합계						149,567	52,984	831	95,752
1	강동구 송파초	초	(가칭)산빛초	'27. 3	42(1) 병설유6(1)	52,500	51,007	653	840
2	성북구 강북초	초	(가칭)신길음초	'31. 3	22(2) 병설유4(1)	37,417	0	132	37,285
3	성동구 광진	특수	(가칭)성진학교	'29. 3	22	59,650	1,977	46	57,627

※ 자료근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2

76) (성동광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섬로 365(성수동)

7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이하 생략)

78) 「서울특별시 학교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 건축의 모든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합리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학교건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 각급학교의 신축, 전면개축과 사회체육시설·평생학습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화 시설사업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 전 과정(설계, 시공, 준공)에 관한 사항

가. 설계에 관한 사항

나. 주요공정별 시공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다. 준공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시설 건축 관련 건의사항

- 교실증축의 경우, (강남서초)대현초를 포함한 5교⁷⁹⁾의 모듈리교실 임차료, 시설비 등 일반재원 10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5〉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일 반 재 원	목 적 지 정 우 선 확 정	추 경 편 성
16,979	15,885	1,094	6.9	1,094	-	-

- (강남서초)대현초⁸⁰⁾는 인근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사업 유입학생 배치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3차 모듈리 임차료 5,4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강남서초)원촌초⁸¹⁾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으로 예상되는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2차 모듈리 임차료 2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강남서초)내곡중⁸²⁾은 내곡공공주택지구 중학생 학령인구 일시적 증가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한 모듈리 및 토지임차료 1억 8,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6〉 대현초, 원촌초, 내곡중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학 교 명	증설완료	학 급 규 모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 증 경 감 액	향 후 소 요 액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대현초	'25. 3.	42(2) [증 : 교실 6]	1,352	1,298	54	0
	원촌초	'25. 9.	51(2) [증 : 교실 8]	1,229	728	200	301
	내곡중	'26. 3.	22(1) [증 : 교실 5]	840	569	185	86

79)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 공립초(3교) : (강남서초)대현초, 서이초, 원촌초
- 공립중(2교) : (강동송파)해누리중, (강남서초)내곡중

80)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8길 16(대치동)

81)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45길 26(반포동)

82)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7길 9-20(신원동)

- (강남서초)서이초⁸³⁾는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2028년 1월 입주 예정) 등에 따른 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지속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교실 13실, 돌봄교실 1실, 특별교실 3실을 증개축하기 위해 '26년도 본예산에 4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이 예상되는 추가시설비 5억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7〉 서이초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학교명	증설완료	학급규모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증액	경감액	향소요액	후요액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서이초	'27. 3.	49(1) [증 : 교실 17]	8,318	7,742		500		76

□ **학교시설확충** (사업별 설명자료, p.730, p.734)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확충중 강당 겸 체육관**은 (서부)서연중⁸⁴⁾을 포함한 8교⁸⁵⁾에 대해 일반재원 총126억 7,7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으로

- 공립초등학교 4교중 (북부)태랑초⁸⁶⁾는 '26년도 본예산, 시설비 미확보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사업재개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부)태릉초⁸⁷⁾의 경우, '25년 12월, 설계공모심사 완료⁸⁸⁾에 따라 시설비 6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며 (강동송파)성내초⁸⁹⁾는 공사 실시설계를

83)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5(서초동)

84) (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9-6(연희동)

85) 「강당 겸 체육관」 편성 현황

- 공립초(4교) : (북부) 태랑초, 태릉초, (강동송파) 성내초, (강서양천) 방화초
- 공립중(2교) : (서부) 서연중, (강남서초) 서초중
- 공립고(1교) : (북부) 효문고
- 공립중(1교) : (본부) 중앙여중

86) (북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길 31(공릉동)

87) (북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길 36(공릉동)

8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4428('25.12.18), “설계공모 심사결과 알림(태릉초)”

89)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3길 19(성내동)

추진하고자 설계공모보상비 및 설계비 총 3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고, (강서양천)방화초⁹⁰⁾의 경우, '2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10억원을 기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시설비 2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공립중학교 2교중 (서부)서연중⁹¹⁾은 '2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20억원을 기편성하였으나, 급식실 증축 병행사업⁹²⁾ 진행중 필요한 시설비 10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강남서초)서초중⁹³⁾의 경우,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재개를 위해 필요한 시설비 3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공립고등학교 1교 (북부)효문고⁹⁴⁾는 '2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한 후, 준공('26년 11월 예정)까지 필요한 남은 소요액 전액(23억 9,3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이며
- 사립학교 1교 (본부)중앙여중⁹⁵⁾은 공사(중앙여고 급식실 증축 병행사업) 진행 중 필요한 시설비 15억 6,200만원을 순증 편성한 것임

90)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길 92(방화동)

91) (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9-6(연희동)

92) 서연중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지하주차장 증축 복합화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 10. ~ 2027. 3.

- 사업량: 건축연면적 1,705.4㎡ (지하2층 / 지상1층) *지하주차장 연면적 5,521.8㎡ 제외

완공(예정)	위치	학급수	총사업비(재원)
2027. 3.	서대문구 연희로11마길 9-6	13(1)	- 교육청: 114.79억원 - 서울시: 1억원 - 서대문구: 142억원 합계: 257.79억원

※ 자료근거: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지하주차장 증축(재심사) 단위사업계획서”(’24년 1회 심사)

93)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3길 48(서초동)

94) (북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32(쌍문동)

95) (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1가길 7(북아현동)

〈표 4-18〉 강당 겸 체육관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설립별	학 교 명	총 소요액	기 확보액	추경증감액	향후소요액
합 계				42,390	9,487	12,677	20,225
1	서 부	공 립	서 연 중	4,693	2,455	1,000	1,238
2	북 부	공 립	태 량 초	4,602	87	600	3,915
3	북 부	공 립	태 령 초	4,201	203	600	3,399
4	북 부	공 립	효 문 고	5,118	2,725	2,393	-
5	강동송파	공 립	성 내 초	10,175	48	379	9,748
6	강서양천	공 립	방 화 초	4,013	1,336	2,643	34
7	강남서초	공 립	서 초 중	5,391	-	3,500	1,891
8	본 부	사 립	중 앙 여 중	4,196	2,633	1,562	-

※ 자료근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3

- 기타증축은 (강서양천)월촌중⁹⁶⁾ 특별교실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0억 5,200만원, (본부)광신방송예술고⁹⁷⁾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 15억 8,100만원 및 (본부)송실중⁹⁸⁾ 본관동 특별교실 증축 시설비 5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96)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1(목동)

97) (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신길 141(신림동)

98) (본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6(신사동)

- 공립학교 (강서양천)월촌중의 경우, 특별교실 증축과 연계하여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⁹⁹⁾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특별교실 증축비(20억 5,200만원) 순증 편성을 요청한 것이며,
- 사립학교 2교 (본부)광신방송예술고, (본부)송실중의 경우, 전액 목적지정재원(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1월, '26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¹⁰⁰⁾ 21억 3,800만원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중 예산총칙¹⁰¹⁾에 따라 성립전 우선사용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임

〈표 4-19〉 기타증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설립별	사 업 명	총 소요액	기 확보액	추경증감액	향후소요액
합 계				4,190	-	4,190	-
1	강서양천	공립	월촌중 특별교실 증축	2,052	-	2,052	-
2	본부	사립	광신방송예술고 특별교실 증축(특교)	1,581	-	1,581	-
3	본부	사립	송실중 특별교실 증축(특교)	557	-	557	-

※ 자료근거: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3

99) 월촌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 내역

(단위 : m², 백만원)

소관부서	규모		소요예산				편성사유
	면적	층	총소요액	기확보액	본예산편성액	향후소요액	
강서양천	1,395	2	2,834	229	1,000	1,605	시설비

※ 자료근거: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672

10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987 ('25.10.20), “2025년 제3차 및 2026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서울)”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9조

-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738, p.766, p.777, p.782)

○ **학교시설환경개선**은 ①**노후시설개선**(1,776억 8,500만원), ②**(꿈담)디자인혁신사업**(99억원), ③**그린스마트스쿨**(237억 5,800만원), ④**노후교사개축**(21억 9,100만원)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2,13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으로

- 증액 요청한 2,135억 3,500만원은 일반재원 1,869억 1,300만원과 목적지정재원 266억 2,200만원(전액 우선확정분)으로 확인되며
- 우선확정분 266억 2,200만원은 '26년 1월 교부된 '26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¹⁰²⁾ 250억 4,700만원 및 '26년 4월 전입된 '26년 광역자치단체전입금¹⁰³⁾ 15억 7,500만원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에¹⁰⁴⁾ 따라 성립전 우선사용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임

〈표 4-20〉 학교시설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A+B)	일반재원 (A)	목적지정재원(B)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157,020	370,556	213,535	186,913	26,622	-
① 노 후 시 설 개 선	157,020	334,707	177,685	151,063	26,622	-
②(꿈담)디자인혁신사업	-	9,900	9,900	9,900	-	-
③ 그 린 스 마 트 스 쿨	-	23,758	23,758	23,758	-	-
④ 노 후 교 사 개 축	-	2,191	2,191	2,191	-	-

10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987 ('25.10.20), “2025년 제3차 및 2026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서울)”

103)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6139 ('26. 4. 9), “2026년 특별교육경비보조 사업비 전출 알림”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9조

-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①**노후시설개선**¹⁰⁵⁾은 화장실개선 공사를 포함한 17개 사업내용, 484건의 물량에 대해 1,776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일반재원 편성분 1,510억 6,300만원과 목적지정재원 266억 2,200만원 (전액 우선확정분)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화장실개선**(378억 4,400만원), **바닥개선**(102억 7,200만원) 및 **기타 사업**¹⁰⁶⁾(605억 4,200만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노후 및 위험 시설 개선 사업 대상교 확대 등을 위해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나, 사업시기 재조정 및 세출예산 절감¹⁰⁷⁾ 등의 사유로 이월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내 지출가능한 규모로 소요재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5) 노후시설개선 내역

- 교육환경개선사업(11개)* :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냉난방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소방시설 개선, 방수공사, 바닥개선,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기타사업
- 안전관리(5개) : 내진보강, 샌드위치판넬제거, 드라이비트해소, 석면제거, 정밀점검
- 장애인편의시설(1개)

* **교육환경개선사업(11개)중 10개 사업(기타사업 제외)**은 「2024~2026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공개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내용연수 경과여부, 노후도, 동시 진행 필요성 등을 현장 실사에 기초하여 학교별-분야별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개하고 있음

106) 주요 시설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써 학교별 다양한 환경개선 수요 및 현안사항(학생 안전 및 학습권 관련)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212 ('24.10.14),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안)”

〈표 4-21〉 2024~2025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 및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세 부 사 업	2025			2024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률
합 계	132,556	28,295	5.0	78,468	79,778	16.8
① 화장실개선	33,974	3,350	3.9	11,251	13,741	41.1
② 전기시설개선	2,787	437	2.5	-	-	-
③ 창 호 개 선	5,490	1,535	5.7	11,890	11,227	19.4
④ 외 벽 개 선	9,606	1,452	5.6	8,595	12,727	23.4
⑤ 소방시설개선	12,329	1,698	5.7	2,733	2,511	18.8
⑥ 방수공사	6,127	2,068	8.4	4,024	3,374	16.3
⑦ 바 닥 개 선	10,767	1,308	4.9	1,467	2,499	15.4
⑧ 도 장 공 사	2,676	242	4.3	1,937	2,205	20.9
⑨ 외부환경개선	407	672	8.5	473	1,025	17.9
⑩ 냉난방개선	15,683	2,733	3.7	25,056	7,115	10.1
⑪ 기 타 사 업	32,709	12,799	5.2	11,041	23,353	12.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 ('25. 4.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785 ('26. 4. 8)

- **안전관리**는 위험요인의 사전점검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①**내진보강** 115억 3,700만원, ②**정밀점검** 30억 3,100만원, ③**석면제거** 12억 9,900만원, ④**드라이비트해소** 203억 4,300만원, ⑤**샌드위치판넬제거** 4,200만원 등 362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내진보강**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를 위해 '26년도 본예산에 500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추가 확보를 위해 소요액 115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으며,
 - **정밀점검**은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안전성평가 타당성검토를 위해 4억 6,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위한 관리용역비 신규 편성 등을 위해 3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석면제거**의 경우 공·사립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 사업 실시를 위하여 시설비 및 학교회계전출금 12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고,
 - **드라이비트해소**의 경우,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제거 및 준불연 이상 단열재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공립 51교, 사립 28교 대상 203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샌드위치판넬제거**는 (동작관악)영등포교¹⁰⁸의 교내 창고 샌드위치판넬 해소를 위해 시설비 4,200만원을 순증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안전관리**의 경우에는 학교 요청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 등으로 이월과 불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8) (동작관악)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8길 5-13(대방동)

〈표 4-22〉 2024~2025 안전관리 이월 및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세 부 사 업	2025			2024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률
합 계	67,199	13,656	4.4	123,816	49,250	12.7
① 내 진 보 강	20,797	2,907	2.0	48,212	5,787	5.0
② 정 밀 점 검	2,366	3,315	14.1	2,304	5,340	17.8
③ 석 면 제 거	18,000	3,128	4.2	42,223	11,896	8.2
④드라이비트해소	24,817	3,165	4.9	29,407	24,431	27.3
⑤샌드위치판넬제거	1,218	1,141	15.2	1,669	1,796	21.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 ('25. 4.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785 ('26. 4. 8)

〈표 4-23〉 노후시설개선 사업내역별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사 업 내 역	기정예산	(추경증감) 물 량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A+B)	일반재원 (A)	목적지정재원(B)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157,020	484	177,685	151,063	26,622	-
화 장 실 개 선	40	43	37,844	37,844	-	-
전 기 시 설 개 선	28	11	1,646	1,646	-	-
창 호 개 선	2,842	24	7,435	6,817	618	-
외 벽 개 선	4,406	10	7,125	5,918	1,207	-
소 방 시 설 개 선	198	1	591	591	-	-
방 수 공 사	521	24	4,985	4,770	215	-
바 닥 개 선	85	18	10,272	6,415	3,857	-
도 장 공 사	275	5	880	764	116	-
외 부 환 경 개 선	648	7	978	615	363	-
냉 난 방 개 선	-	23	7,467	7,467	-	-
기 타 사 업	96,940	193	60,542	40,296	20,246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550	7	1,667	1,667	-	-
안전관리(내진보강)	50,018	2	11,537	11,537	-	-
안전관리(정밀점검)	468	33	3,031	3,031	-	-
안전관리(석면제거)	-	3	1,299	1,299	-	-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	79	20,343	20,343	-	-
안전관리(샌드위치판발거)	-	1	42	42	-	-

- ②(꿈담)디자인혁신사업은 '26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다가 '25년도 예산액 수준(102억원)으로 신규 편성(99억원)을 요청한바¹⁰⁹⁾, 사용자 참여형 학교공간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전액을 학교회계로 진출하고 있어 학교에서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더욱 철저히 관리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4〉 (꿈담)디자인혁신사업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소요예산	산출내역
학교공간재구조화	9,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회계전출금 9,900,000천원 - 300,000,000원×33교 = 9,900,000천원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67

-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③그린스마트스쿨의 경우,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설계공모보상비, 설계비 및 시설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237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공립각종학교 1교 (서부)아현산업정보학교¹¹⁰⁾는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에 필요한 설계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 공립중학교 2교중 (동부)청량중¹¹¹⁾의 경우에는 준공정산¹¹²⁾ 결과 총민간투자비 및 건물가액 증가에 따라 취득세액이 추가되어 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성북강북)삼선중¹¹³⁾은 그린스마트스쿨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설계비 3억 8,8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임

109) 2025년도 (꿈담)디자인혁신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금액 (F)	불용액 (G=E-F)
이월액(A)	본예산액(B)	추경예산액(C)	예산변경액(D)	계(E=A+B+C+D)		
213	10,200	-	-	10,413	10,080	332

110) (서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49(아현동)

111) (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01(청량리동)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4714 ('25. 8.27), “준공 보고(통보) 및 확인 필증 교부(청량중 BTL)”

113) (성북강북)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0길 65(미아동)

- (동부)안평초¹¹⁴⁾를 포함한 공립초등학교 13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따른 시설비, 모듈러임차료 등 총 223억 7,900만원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5〉 공립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 관 부 서	학 교 명	예산요구액	착 공 (예 정)	준 공 (예 정)	편 성 사 유
합 계 (1 3 건)			22,379			
1	동 부	안 평 초	268	'27. 7	'29. 1	설계경제성검토비 설 계 비
2	서 부	갈 현 초	4,500	'25. 7	'28. 2	시 설 비
3	서 부	대 조 초	50	'27. 8	'30. 7	설계경제성검토비
4	서 부	역 촌 초	5,568	'26. 1	'28.12	모듈러임차료, 시설비 설 계 의 도 구 현 비
5	남 부	문 백 초	400	'25. 1	'26. 6	시 설 비
6	남 부	오 류 초	2,500	'25. 7	'28. 1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 설 비
7	북 부	도 봉 초	2,500	'25. 8	'27. 5	시 설 비
8	중 부	보 광 초	23	'26. 1	'28. 1	설 계 의 도 구 현 비
9	강 서 양 천	신 남 초	3,000	'23.12	'28. 2	시 설 비
10	동 작 관 악	남 부 초	1,700	'27. 8	'28. 8	모듈러임차료, 시설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등
11	동 작 관 악	당 곡 초	1,500	'25. 7	'28. 2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시 설 비
12	성 북 강 북	유 현 초	14	'23. 7	'25. 8	취 득 세
13	성 북 강 북	화 계 초	355	'27. 7	'30. 7	설 계 비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79
 “2021년~2025년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현황(공개용)” (26. 4. 1자 기준)

114) (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61 (장안동)

- 사립고등학교 2교중 (강동송파)일신여상¹¹⁵⁾의 경우, 구조안전성평가비, 설계공모보상비 및 설계비 등 총 3억 4,3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순증) 요청하고 (북부)광운인공지능고¹¹⁶⁾는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며,
- 사립중학교 1교 (동부)대광중¹¹⁷⁾은 그린스마트스쿨 예비 인증을 위한 각종 인증비와 설계용역 완수비 3억 3,200만원을 순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사전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통상 2회계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 공사로서 대규모 이월과 불용이 반복하여 발생하고¹¹⁸⁾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비해 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회계연도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15)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8길 8(송파동)

116) (북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 24(월계동)

117) (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6(신설동)

118) 2023~2025년 그린스마트스쿨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A-B-C)
2025	142,543	76,941	62,609	2,986
2024	260,205	51,896	45,334	162,975
2023	154,246	28,226	70,122	55,89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785 ('26. 4. 8)

〈표 4-26〉 그린스마트스쿨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A+B)	일반재원 (A)	목적지정재원(B)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	23,758	23,758	23,758	-	-
	공립각종	-	90	90	90	-	-
	공립중	-	414	414	414	-	-
	공립초	-	22,379	22,379	22,379	-	-
	사립고	-	543	543	543	-	-
	사립중	-	332	332	332	-	-

○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노후교사개축**은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부)역촌유¹¹⁹⁾ 공정 계획에 따른 노후교사 전면개축 장기사업 3차 계약 발주를 위해 시설비(21억 9,100만원) 편성(순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7〉 노후교사개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서	설립별	학교명	예산요구액	착공	준공(예정)	편성사유
서부	공립	역촌유	2,191	'24. 9.	'26.10.	시설비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83

119) (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7길 25(역촌동)

- 역촌유 노후교사개축 사업은 '24년도에서 '25년도로 35억 3백만원이 사고이월된 후 '25년도에는 이월예산으로만¹²⁰⁾ 사업이 운영되었고 '26년도 본예산에도 편성 제외되었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설비 21억 9,1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육부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에 따르면¹²¹⁾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하고,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노후교사 개축, 그린스마트스쿨과 같은 장기계속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 이월의 방법도 고려하여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0) 2024~2025 역촌유치원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	당해연도	계			
2025	5	3,503	-	3,503	3,199	-	304
2024	4	-	4,086	4,086	231	3,503	352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785('26. 4. 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25. 4. 3)

121) 교육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5. 8), p.18

3. 시설사업비

○ 계속비 편성

- 근거: 「지방재정법」 제42조

- 의의: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해에 걸쳐 계속비로 지출

- 편성: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은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 해당연도에는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

※ 계속비가 아닌 일반예산에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 관행 금지

○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 학교시설사업은 학교특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산정 후 해당연도에 집행가능금액 만큼만 편성하고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여 이월액 최소화

□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712, p.725, p.839, p.857)

○ **학교급식환경개선**의 경우, ①**급식시설개선**(1,057억 2,100만원), ②**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172억 7,000만원), ③**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164억 4,900만원), ④**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13억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1,407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임

- 증액 편성 요청한 1,407억 7,000만원은 일반재원 1,404억 4,900만원과 목적지정재원 3억 2,100만원(우선확정분)으로 제출된 바, 우선확정분은 '26년 1월 교부된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¹²²⁾으로 (본부)한영고¹²³⁾ 학생식당 바닥교체 사업(3억 2,100만원) 소요분으로 확인됨

〈표 4-28〉 학교급식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A+B)	일반재원 (A)	목적지정재원(B)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39,310	180,080	140,770	140,449	321	-
① 급 식 시 설 개 선	4,833	110,554	105,721	105,400	321	-
② 급 식 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7,030	44,300	17,270	17,270	-	-
③ 노 후 조 리 기 구 교 체 및 확 충	1,572	18,021	16,449	16,449	-	-
④ 신 규 학 교 조 리 기 구 구 입	5,875	7,205	1,330	1,330	-	-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9

12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987 ('25.10.20), “2025년 제3차 및 2026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서울)”

123) (본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32(상일동)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①**급식시설개선**은 (성북강북)돈암초¹²⁴ 급식실및학생식당리모델링(19억 400만원)을 포함한 342개 사업, 1,057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②**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은 (동부)안평초¹²⁵를 포함한 18개교의 설계비 및 시설비 등 일반재원 17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동부)안평초 포함 12개교에 대하여 시설비 162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서부)용강초¹²⁶ 포함 6개교에 대하여 설계공모보상비와 설계비로 10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중 ①(남부)영등포초¹²⁷, ②(북부)수락초¹²⁸, ③(강동송파)신명초¹²⁹, ④(강서양천)신기초¹³⁰, ⑤(강남서초)서초중¹³¹, ⑥(강남서초)반원초¹³²의 경우, '27년 1~7월중 준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실제소요액에 한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24) (성북강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길 38(동소문동6가)

125) (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61(장안동)

126) (서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7길 9(대흥동)

127) (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56(문래동1가)

128) (북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5(상계동)

129)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24길 33(길동)

130)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92(신정동)

131)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3길 48(서초동)

132)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3길 28(잠원동)

- 특히 ⑦(강서양천)목동중¹³³⁾의 경우, '26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확인되어 추경예산을 편성 요청한 단계부터 이미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로 판단되어 편성요청 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¹³⁴⁾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금번 추경의 긴급성을 고려하면 상반기중 보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회계연도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소요예산만 편성요청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133)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신정동)

134)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표 4-29〉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 관 서 부	설 립 별	학 교 명	예 산 액			착 공	준 예	공 정	편 사	성 유
				설계공모 보상비	설 계 비	시 설 비					
합 계 (1 8 건)				79	933	16,256					
1	동 부	공 립	안 평 초	-	-	1,504	'26. 4	'26.12			시 설 비
2	서 부	공 립	용 강 초	23	275	-	'27. 7	'28. 8			보 상 비 설 계 비
3	남 부	공 립	①영등포초	-	-	1,500	'26. 7	'27. 7			시 설 비
4	남 부	공 립	영 문 초	19	190	-	'27. 7	'28. 3			보 상 비 설 계 비
5	북 부	공 립	온 곡 중	-	90	-	'27. 3	'27.11			설 계 비
6	북 부	공 립	중 평 중	13	134	-	'27. 6	'28. 3			보 상 비 설 계 비
7	북 부	공 립	한 천 중	-	-	2,200	'25.12	'26.12			시 설 비
8	북 부	공 립	② 수 락 초	-	-	1,351	'26. 7	'27. 1			시 설 비
9	강 송 동 파	공 립	③ 신 명 초	-	-	1,500	'26. 7	'27. 2			시 설 비
10	강 양 서 천	공 립	⑦ 목 동 중	-	-	1,500	'26.12	'27.12			시 설 비
11	강 양 서 천	공 립	신 서 중	-	-	1,869	'26. 1	'26.12			시 설 비
12	강 양 서 천	공 립	④ 신 기 초	-	-	1,000	'26. 3	'27. 4			시 설 비
13	강 양 서 천	공 립	양 원 초	11	116	-	'27. 7	'28. 2			보 상 비 설 계 비
14	강 서 남 초	공 립	⑧ 방 배 중	-	-	200	'24.12	'25.12			시 설 비
15	강 서 남 초	공 립	⑤ 서 초 중	-	-	1,500	'26. 5	'27. 4			시 설 비
16	강 서 남 초	공 립	⑥ 반 원 초	-	-	2,000	'25.12	'27. 2			시 설 비
17	본 부	사 립	양 천 고	-	-	132	'25. 3	'26. 6			시 설 비 물 양 분
18	본 부	사 립	선 정 고	13	128	-	'27. 4	'28. 2			보 상 비 설 계 비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25

- ⑧(강남서초)방배중¹³⁵⁾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실을 철거하고 기존 체육관 하부 필로티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¹³⁶⁾ 금번 추경예산안에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다.

- 2025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자료에는 동 사업비의 사고이월 사유를 ‘준공기한 미도래¹³⁷⁾’로 명시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¹³⁸⁾에는 해당 사업 준공예정일자를 ‘25년 12월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바,

〈표 4-30〉 방배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현황

소 관 서 부 서	설 립 별	학 교 명	재 정 투 자 심 사 (최 종)		공 유 재 산 심 의 (최 종)		설 계	착 공	준 예	공 정
			자 체	중 앙	심 의	관 리 계 획				
강 남 서 초	공 립	방 배 중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23.10	'23.12	'24. 9	'24.12	'25.12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29

- 사업별 설명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¹³⁹⁾에 따라 작성·제출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서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제 추진현황과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예산 편성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관련 기준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35)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44(반포동)

13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13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719 ('26. 3.31), “2025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관련 요구자료”

13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29

139)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서생략)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표 4-31〉 방배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D)	사 고 이월액 (E)	집 행 잔 액 (F=C-D-E)	사 사 고 고 이 이 월 월 유 유
		설계비 (A)	시설비 (B)	계 (C=A+B)				
합	계	74	2,273	2,347	576	1,531	40	
	'24년 본예산	74	1,434	1,508	49	1,419	40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추의 요구로 방학중 공사 시행
	'25년 본예산	-	200	639	527	112	0	준공기한 미도래
	'25년 1회 추경예산	-	439					
	'26년 1회 추경예산안	-	200	200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308 ('25. 4. 3),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관련 요구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8719 ('26. 3.31), “2025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관련 요구자료”

- 또한 '24년도 본예산부터 '26년도 추경예산안까지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사업 장기화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2〉 방배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예산소요액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소요액	기 확보액	예산액	차 기 필요예산액	편성사유
'24년	본예산	2,046	-	1,508	538	설계비 시설비
'25년	본예산	2,363	1,518	200	644	시설비
'25년	1회 추경예산	2,351	1,718	439	194	시설비
'26년	1회 추경예산안	2,781	2,351	200	230	시설비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73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640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060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27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③**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은 (강동송파)문현초¹⁴⁰⁾를 포함한 516개교에 대하여 내용연수 경과 등에 따른 노후 조리기구 구입비 16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④**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은 (동부)동원초¹⁴¹⁾ 급식실 전면개선 공사와 (동부)면중초¹⁴²⁾ 및 (동부)안평초¹⁴³⁾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북부)한천중¹⁴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공사가 연도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준공시기에 맞춰 조리기구를 확보하고자 1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3〉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정 예 산 (A)	추 경 예 산 안		재 원	증 감 사 유
		증감액 (B)	계 (A+B)		
합 계 (4 건)	-	1,330	1,330		
동원초 식기소독고외7종	-	308	308	일반재원	급식실 전면개선
면중초 전자저울외81종	-	336	336	일반재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 축)
안평초 에어커튼외80종	-	396	396	일반재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 모 델 링)
한천중 에어커튼외76종	-	290	290	일반재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57

140)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37(장지동)

141) (동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14(망우동)

142) (동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70길 43(면목동)

143) (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4길 61(장안동)

144) (북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65(공릉동)

(2) 목적지정재원 증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중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목적지정재원은 2,305억 8,300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7,532억 3,600만원)중 30.6%에 해당함

〈표 4-34〉 목적지정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편 성 재 원	증 감 액
합 계		230,583
①우선확정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전입금, 기타지원금	229,495
②추경편성	기타지원금	1,088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5

①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사업

- 목적지정재원으로 교부되어 우선확정된 사업은 155건, 2,294억 9,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145) 및 예산서중 예산총칙¹⁴⁶⁾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145)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14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표 4-35〉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합	계	155	229,495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	134	200,821
	국고보조금	3	2,764
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	10,589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	10,399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	3	11
	전입금	3	4,911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5

- 창의미래교육과 소관 **AI정보교육중심학교운영(특별교부금)**¹⁴⁷⁾은 특별교부금 66억 9,8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AI·SW 교수학습자료개발, AI·SW연수운영, AI윤리디지털시민성수업평가전문가 연수 등 1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당 운영비, 전출금,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147)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11

〈표 4-36〉 AI정보교육중심학교운영(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A)	추경 증감(B)	추경 예산(A+B)
합	계	-	6,698	6,698
A I · S W	교 수 학 습 자 료 개 발	-	196	196
A I · S W	연 수 운 영	-	359	359
A I	교 육 성 과 확 산	-	25	25
A I	윤 리 디 지 털 시 민 성 수 업 평 가 전 문 가 연 수	-	115	115
A I	정 보 교 육	-	348	348
A I	중 점 학 교 연 구 · 지 원 센 터 (위 탁)	-	18	18
A I	중 점 학 교 운 영	-	5,311	5,311
대 학 연 계 A I · S W	캠 프 운 영	-	90	90
로 봇 · 피 지 쉐 A I	연 구 회	-	102	102
사 제 동 행 A I	로 봇 캠 프 운 영	-	114	114
정 보 신 규 교 사 멘 토 링		-	16	16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158~161

- 동 사업의 각 항목별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검토하면, 일부 소요예산에는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이 각 항목을 ‘식’으로만 기재하여 편성요청된 내역의 실시횟수, 대상인원, 단가 등의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없고,
- 기재된 사업 내용으로는 일부 실시용역이나 워크숍의 목적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바,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과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편성사례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과거 실적을 확인하면, '24년 172교, '25년 103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어¹⁴⁸⁾ 향후에는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과거 실적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37〉 AI정보교육중심학교운영(특별교부금) 부적정 편성내역

구분	내역
AI·SW연수운영	○ 운영비 - 운영용역비 55,000,000원×6식 = 330,000 천원 - 평가회용역비 9,900,000원×1식 = 9,900 천원
AI윤리디지털시민성수업 평가전문가연수	○ 운영비 - 연수용역비 30,000,000원×1식 = 30,000 천원
대학연계AI·SW캠프운영	○ 운영비 - 운영용역비 42,000,000원×2식 = 84,000 천원
로봇·피지컬AI연구회	○ 운영비 - 워크숍및평가회 22,000,000원×2식+6,860,000원×1식 = 50,860 천원
사제동행AI로봇캠프운영	○ 운영비 - 운영용역비 102,000,000원×1식 = 102,000 천원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158~161

148)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5600 ('26. 4. 6), “(창의미래교육과)2026년 특별교부금(디지털교육 혁신) 성립전 우선사용 신청”

나.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추진 사업	AI·정보교육중심학교 초·중·고 172교 운영	AI·정보교육중심학교 초·중·고 103교 운영	AI 중점학교 초·중·고 182교 운영
소요 예산	1,854,000	469,000	6,698,000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기타사업**¹⁴⁹⁾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중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 및 기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¹⁵⁰⁾ 중곡초 수영장 전면보수 28억 8,800만원 등 총 20개교 대상 사업비 186억 7,1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초등교육과 소관 **초등방과후학교운영**¹⁵¹⁾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방과후교실 교육비 지원 154억 5,100만원과 방과후교실 수강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학교 대상 연수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효율화 지원 1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5억 7,9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유보통합실행강화**¹⁵²⁾는 유보통합 시범기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1:13을 초과하는 학급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총 121억 4,0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 창의미래교육과,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특별교부금)**¹⁵³⁾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과에서 AI·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AI·디지털 선도학교 총 190교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운영지원 68억 2,600만원,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서비스 운영비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상 시도분담금 17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7억 2,3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149)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41

150) (노후시설개선)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소방시설개선, 방수공사, 바닥개선,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안전관리(내진보강, 정밀점검), 기타사업

15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57

152)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43

153)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29

〈표 4-38〉 주요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기 타 사 업	18,671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늘봄학교운영	초 등 방 과 후 학 교 운 영	15,579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유아교육운영	유 보 통 합 실 행 강 화	12,141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늘봄학교운영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9,610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ICT활용교육지원	디 지 털 기 반 교 육 혁 신 지 원	8,724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ICT활용교육지원	A I 정 보 교 육 중 심 학 교 운 영	6,698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ICT활용교육지원	디 지 털 새 싹 운 영	6,585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정보보안관리	디 지 털 인 프 라 지 원	6,541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력향상지원	책 임 교 육 학 년 지 원	6,527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ICT활용교육지원	A I D T 교 원 연 수 질 관 리 체 계 구 축	6,509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ICT활용교육지원	A I D T 적 용 교 원 연 수 지 원	6,385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대학수학능력시험	대 학 입 학 전 형 지 원	5,524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운영	친 환경 학 교 급 식 비 (1 ~ 2 월)	5,519
전입금	학력평가관리	전 국 연 합 학 력 평 가 실 시	4,88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교육과정운영지원	과 학 교 육 지 원 체 계 구 축	4,127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바 닥 개 선	3,857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 교 급 식 운 영	친 환경 학교 급 식 비 (1 ~ 2 월)	3,72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 교 안 전 망 구 축	3,686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 교 폭 력 사 안 처 리 지 원	3,530
특별교부금 (디지털교육혁신)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녀 교육 지원	다 문 화 학 생 지 원	3,438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시 스 템 운 영	3,318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각 종 체 육 활 동	체 육 활 동 활 성 화	3,220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관시설유지관리	공 공 도 서 관 환 경 개 선	3,000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직업교육환경개선	직 업 계 고 재 구 조 화 지 원	3,000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폭력예방교육	학 교 폭 력 피 해 학 생 치 유 교 육 기 관 설 립	3,000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 력 향 상 지 원	기 초 학 력 진 단 - 보 정 시 스템 운 영 및 기 초 학 력 지 원 강 화	2,990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각 종 체 육 활 동	학 교 스포츠 클럽 운영	2,780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학 교 급 식 운 영	친 환경 유치원 급 식 비 (1 ~ 2 월)	2,610
국고보조금	민간투자사업상환	그 린 스 마 트 B T L	2,559

※ 우선확정액 25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7~24

② 목적지정재원 추가경정예산편성

○ 목적지정재원중 우선확정을 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사업은 1건, **유아보육료** 10억 8,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 '26년 1월 시행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 지침 등 안내”에 따르면 '26년도 유아보육료 지원항목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가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되어¹⁵⁴⁾ 3~5세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총 45,321명을 대상으로 인상분(2,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표 4-39〉 목적지정재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세부사업	편성액	산출내역
기타 지원금	유아보육료	1,087	○ 자치단체등이전 - 3세보육료 2,000원×18,059명×12월 = 433,424천원 - 4세보육료 2,000원×14,328명×12월 = 343,872천원 - 5세보육료 2,000원×12,934명×12월 = 310,416천원

※ 자료근거 :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89

- 또한 '26. 1. 1자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폐지되고 「영유아특별회계법」이 시행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전입금중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과목이 신설되었으나, 예산산정 및 확정, 정산대상, 예산배정방식 등 이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예산관련 업무 추진절차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¹⁵⁵⁾

154) 교육부, 영유아재정과-438 ('26. 1.27),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 지침 등 안내”, (붙임3) 2026년도 예산 산출 기초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원예정아* × 지원단가(1.5만원) × 12개월) *[(취원대상인원) × (취원율)]

155) 교육부, 영유아재정과-438 ('26. 1.27),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집행 지침 등 안내”, (붙임2)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변동사항, 재구성

- 재원(세입), 예산산정, 예산확정, 정산대상, 예산배정방식, 지자체 교부 시기, 집행결과 제출 등 업무 추진절차는 이전 유아교육특별회계와 동일

V.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 「지방재정법」은 예산의 **성과계획서**¹⁵⁶⁾, **성인지예산서**¹⁵⁷⁾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¹⁵⁸⁾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¹⁵⁹⁾을 통해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에는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등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치되도록 수정¹⁶⁰⁾한 후 제출하여 예산안과 성과계획서 등 첨부서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56)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7)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8)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이하생략)

159)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60) 교육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5. 8), p.173

- 성과계획서 보완 및 변경 (’26. 1~12월)
 - 추경예산 등 예산변경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사업비를 변경된 예산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음

VII. 부대의견

-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중 부대의견으로 기재한 사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안별로 모두를 적시하지 않으나,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부대의견이 존중되도록 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6. 4.24)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3648
----------	------

제출연월일 : 2026년 4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2026년 정부추경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바,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금액(A-B)	비율	
총 규 모	11,695,443	100	10,942,207	753,236	6.9	
세 입	중앙 정부이 전 수입	7,042,292	60.2	6,314,966	727,326	11.5
	자치 단체이 전 수입	4,247,086	36.3	4,226,098	20,988	0.5
	기 타 이 전 수 입	21,115	0.2	16,193	4,922	30.4
	자 체 수 입	101,319	0.9	101,319	0	0.0
	전 년 도 이 월 금	0	0.0	0	0	0.0
	금 융 자 산 회 수	3,631	0.0	3,631	0	0.0
	내 부 거 래	280,000	2.4	280,000	0	0.0
세 출	인 건 비	7,538,620	64.4	7,429,208	109,412	1.5
	기 관 운 영 비	45,220	0.4	45,220	0	0.0
	학 교 운 영 비	1,012,536	8.6	978,597	33,939	3.5
	교 육 사 업 비	2,406,183	20.6	2,179,792	226,391	10.4
	시 설 사 업 비	661,942	5.7	281,726	380,216	135.0
	재 무 활 동	10,487	0.1	7,209	3,278	45.5
	예 비 비 및 기 타	20,455	0.2	20,455	0	0.0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